

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- 의안번호 : 제2537호
- 발 의 자 : 황규복, 김소영, 오한아 의원(찬성자 8명)
- 발의일자 : 2021년 8월 2일
- 회부일자 : 2021년 8월 18일

2. 제안이유

- 가. 최근 코로나19로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한 환경이 제약됨에 따라 공연·전시 등의 제작형태가 온라인으로 변화하고 있음.
- 나.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13조의5가 신설됨에 따라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온라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온라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사업을 규정함(안 제7조제6호).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역문화진흥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5. 검토의견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13조의5가 신설됨에 따라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온라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-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관객들이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 등을 직접 관람하기 어려워 문화예술계가 장기간 침체를 겪고 있으며, 특히 문화환경 기반이 취약한 지역 예술계는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.
- 백신으로 코로나19가 완화되길 기대했으나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확진자로 이러한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공연·전시 등 활동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실시되고 있으나

지역의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가는 이를 송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플랫폼이 없거나 체계적인 홍보가 부족하여 온라인 공간에서 활동성상에 한계가 있음.

- 현재 서울시에서는 문화본부, 서울도서관, 서울시립미술관, 세종문화회관, 서울문화재단, 서울디자인재단 등 6개 실국 및 기관에서 총 49개의 신규 및 기존 사업들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진행하고 있으며,

2021년 문화본부 제1차 추경에서 ‘언택트 공연플랫폼 구축 및 비대면 공연거점 운영’으로 7억원이 편성되었고, ‘남산 실감형 창작 스튜디오’가 2022년 3월 개관을 앞두고 있음.

- 따라서 서울시가 변화하는 공연·전시 등의 환경에 맞추어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.

담당 조사관	연락처
이지영	02-2180-8115

의안번호
2537

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	제 안 자	제안일자		소관 상임위	
	항규복의원 외 2인	2021.8.2		문화체육관광위원회	
주요내용	○ 코로나로 공연·전시 등의 제작형태가 온라인으로 변화하는 내용을 반영한 『지역문화진흥법』 제13조의5 신설에 따라, ○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온라인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○ 제7조 제6호 신설 “6. 온라인 문화예술활동 활성화” ※ 조례 제7조(사업)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				
추진경과	○ '21.5.18 : 『지역문화진흥법』 제13조의5(온라인 문화예술활동의 지원) 신설 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화예술인의 온라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				
부 서 검 토 의 견	원안가결(○) / 수정가결 () / 부결() / 보류()				
쟁점사항 (의회동향, 문제점 등)	○ 같은 취지의 개정조례안(의안번호 2553, 정진술의원 발의)이 발의되어 있어 상임위에서 대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나, ○ 상위법인 『지역문화진흥법』 에서 신설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으로, 기존에 명시된 사업의 삭제 또는 변경이 아닌 새로운 사업으로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				
대응방안					
상 임 위 처 리 결 과					
향 후 계 획					
담당부서	문화예술과	팀장	김정은(☎2133-2552)	담당	이현중(☎2133-2553)